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60호 2013년 3월 29일(금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3년 3월 29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40-1번지 외 2필지
3. 공고기간 : 2013. 3. 29.~ 2013. 4. 18.(20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조양동	1240-1번지	전	1,223	24.85	전상국	2013-건축신고-7 (2013. 3. 28.)	건축주 : 전상국
	1242-2번지	답	2,721	92.26	진규병 외 3인		
	1242-3번지	전	1,007	21.34	정만덕		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7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(033-639-245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의견제출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2. 당사자	성명 (명칭)	(☎)
	주소	
3. 의견		
4. 기타		
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: 성명 : (인), 연락처 속초시장 귀하		
비고	1.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.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